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22

씨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씨나인
대표자	이호철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오늘의 유머 / 약 13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9000만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이호철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모니터링 (2020 ~ 현재)
 신고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 분류 (불법촬영물등) 선택 -> 신고하기

스크랩 소스보기 + 출처보완 **게시물신고**

추천 비공감 **신고** 댓글

신고분류

노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신고를 남용하시면 안됩니다.

광고(성인광고 포함)

불법촬영물

음란

혐오

욕설

악플(공격적 발언, 비아냥)

차별적발언(지역감정조장, 노인비하, 남혐, 여혐 등)

분란조장(분란유도, 어그로, 분탕)

진목질(진분을 과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위)

알베

여시/매갈/취마드

무분별한 물이행위(알베, 여시, 매갈)

게시판위반

출처보완 오남용

기타

신고내용

회원신고하기

○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

(http://www.todayhumor.co.kr/board/to_admin/write.php) : 2020 ~ 현재

사이트 왼쪽하단의 운영진에게 바란다 클릭 ->

삭제요청 선택후 불법촬영물등 문의내용 작성 및 보내기 클릭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 신고확인 -> 게시물 삭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후

결과에 따라 처리 -> 신고자에게 처리 안내

○ 청소년 유해물 삭제 및 게시자 글쓰기 방지등의 조치 실시 : 2020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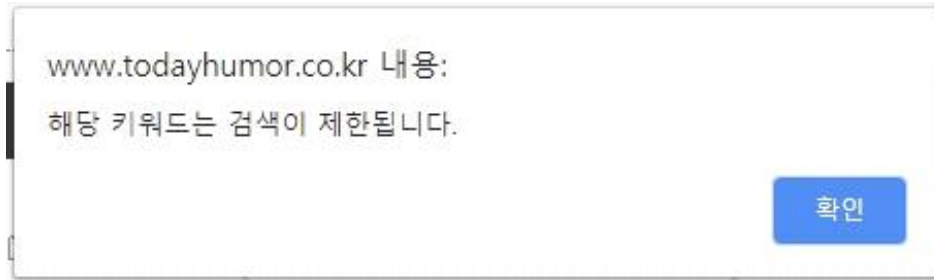
모니터링 및 신고확인후 유해게시물 및 댓글등을 적발시 삭제조치 ->

적발이 반복될 경우 해당회원의 게시물 및 댓글 작성금지등의 제한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련 검색어 검색금지 실시 : 2020. 12월

[성착취] [몰카] [음란물] [불법촬영물]등의 키워드 검색금지 조치

지속적으로 관련 검색어 업데이트예정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 2020년 ~ 현재

사이트 하단의 운영게시판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의견등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오유운영게시판

오유 운영게시판입니다.

오유 운영에 대한 건의와 오유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제안, 오유의 문제점 지적 등 오유의 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추천수가 높아도 베스트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대상기간 : `20.12.10. ~ 12.31.(신고건수 없음)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별지서식]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															
※ 대상기간 : `20.12.10. ~ 12.31.(신고접수 기준)															
□ '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기관·단체												0	0
		소계												0	0
	사유	불법촬영물												0	0
허위영상물 등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												0	0	
	해당없음												0	0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												0	0
		해당없음												0	0
		각하 등												0	0
	소계													0	0
	삭제·차단 사유	불법촬영물												0	0
		허위영상물 등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 요청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중복계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불법촬영물 및 성행위를 묘사한내용등의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외 아래 11개 단체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후 조치

기관·단체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판단이 어

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
-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

○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이상 보관한다.
-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4.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이호철	황규철
부 서	운영	운영
직 책	대표	직원
지 정 일	2020. 12. 12.	2020. 12. 12.

5.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12-18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운영팀2명	2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2-18	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	운영팀2명	1시간	자체교육